

對中國 輸出에 따른 韓.中間 信用狀 紛爭事例

金 然 浩*

- I. 서설
- II. 분쟁사례 1
 - 1. 분쟁경위
 - 2. 분쟁의 배경
 - 3. 중국 B은행에 의한 선적서류 하자 통지의 내용
 - 4. 중국 B은행의 하자 통지내용에 대한 검토
 - 5. 개설은행의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지 시한
- III. 분쟁사례 2
 - 1. 분쟁경위
 - 2. 중국 D은행에 의한 선적서류 하자 통지의 내용
 - 3. 중국 D은행의 하자 통지내용에 대한 검토
 - 4. 기타 문제점
- IV. 결어

I. 서설

한국.중국 간의 무역급증에 따라 양국 은행간 신용장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정부, 은행, 기업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용장을 다룬 국내 은행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은행 측의 사업적 태도와 함께 반 관료조직으로서의 경직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최근에 발생한 한.중간 신용장 분쟁사건 2건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우려가 있는 신용

* 서울地方 뉴욕州 締護士會 締護士

장을 매입한, 또는 매입요청을 받은 한국은행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데 이글의 목적이 있다.

II. 분쟁사례 1

1. 분쟁경위

가. 한국의 S무역회사는 1993. 11. 중국의 L사와의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중국의 B은행 b지점은 수입자인 L회사로부터 한국의 S무역회사를 수자로 하는 신용장 개설의뢰를 받고 1993. 11. 30. 제 1차로 미화 200,000달러 액면의, 1993. 12. 4. 제 2차로 미화 999,936달러 액면의 신용장 2건을 개설하고 한국의 A은행에 통지하였다 (유효기간은 제 1차 신용장이 1994. 1. 5, 제 2차 신용장이 1994. 1. 15.이다.)

다. 한국의 A은행 a지점은 1993. 12. 20. 과 12. 23. 수출자 S무역회사로부터 신용장 2건에 기하여 작성된 수출환어음 및 관련 선적서류 제시와 매입요청을 받고 검토결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수출자 S무역회사에게 신용장 액면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한국의 A은행 a지점은 1993. 12. 21. 과 12. 24. 각각 중국의 B은행 b지점에 대하여 위 2건의 신용장과 관련 선적서류를 DHL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이들은 각각 1993. 12. 28.과 12. 31. 도달되었다.

마. 그러나 중국의 B은행 b지점은 신용장 유효기간내인 1994. 1. 8.(제1차 신용장)과 1994. 1. 10.(제 2차 신용장) 한국의 A은행 a지점에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

하지 않는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하자통지를 하였고 1994. 2. 8. 서류를 반송하였다.

바. 한국의 A은행 a지점은 반송받은 서류를 재검토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도록 일부 수정한 뒤, 1994. 2. 24. 중국의 B은행 b지점에게 다시 송부하였으며 대금지급이 중국적으로 거절당하자 1994. 4. 13. 중국의 위 지점에게 선적서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지점은 중국 공안당국에 수사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반송을 거절하고 있다.

2. 분쟁의 배경

이건 신용장 분쟁의 근본적 배경은 중국의 수입자와 한국의 수출자가 중국으로부터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한국 수출자에 의해 한국의 운송 주선업자로 하여금 위조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한데에 있다. 한국의 A은행은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국의 수출자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으며, 중국의 B은행은 신용장 개설시에는 중국의 수입자의 외화 도피의사를 지득치 못하다가 한국의 A은행이 신용장을 매입한 이후에야 중국 수입자의 불법행위를 내부제보를 통하여 알고 공안당국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의 B은행은 현재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당하지 않게된 반면, 한국의 A은행만 신용장 매입과 한국의 수출자 잠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것이다. 신용장 개설로 인한 돈 유출을 일단 막은 중국의 B은행은 중국의 수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적서류하자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의 A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3. 중국 B은행에 의한 선적서류 하자 통지의 내용

가. 환어음상 지급인의 주소 및 환어음의 번호가 누락되어 있다.

나. 상업송장상에 화물적재상태(Packing in Container)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포장/중량 명세서상 품목번호 기재사항중 "CORE"를 "COR"로 타자하였다.

라. 포장/중량 명세서중 계약번호가 수정되었다.

마. 포장/중량 명세서상 ORIGINAL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

바. 보험증권상에 하인(Shipping Mark)이 누락되었다.

사. 선하증권상 하인이 여타 선적서류에는 "SUN"으로 되어 있는데 "SUL"로 오타되어 있으며, 통지처(Notify Party)를 표시하는 회사를 신용장상 "~ ~ Co."로 요구되어 있는데도 "~ ~ Co. Ltd."로 잘못 되어 있다.

아. 선하증권상에 본선적재일에 부기된 서명과 운송인의 대리인의 서명이 상이하다.

자. 선적후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자에게 선적일자, 선박명등을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Fax/Telex를 송부하여야 하고 수출자(수의자)는 이를 증명된 사본 (Certified Copy)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차. 신용장개설의뢰인이 "~ ~ Imp. ~ ~" 인데도 DHL 수취증 상에는 "~ ~ Mp. ~ ~" 로 나타나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인과 상이하다.

4. 중국 B은행의 하자 통지내용에 대한 검토

가. 제 4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적용

이전 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약정에 따라 1983년도 개정 국제 상업회의소 간행물 제 400호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위 규칙 제3조 「신용장 독립의 원칙」은 은행이 매매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오직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제4조는 신용장 거래의 「서류거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규칙 제 15조 및 제17조는 은행은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관계서류를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수의자가 위조 선적서류에 기하여 매입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이를 사전에 간파하지 못하고 매입한 이상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입은행과 개설은행과 사이에 법률관계는 선적서류가 오직 신용장조건과 형식상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은 선량하고도 성실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은행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로써 그 서류가 외관상 및 문언상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외관상의 정규성 및 상태성을 형식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 2968 판결은, 은행은 신용장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되 객관적이고 보편성있는 해석을 통하여 그 문언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신용장에 의거하여 작성, 제시된 서류인 환어음, 운송서류등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상호모순이 없어야 함은 물론, 위 각 서류상호간에도 상호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상호모순이 없다”는 의미는 서류문면상의 문언 및 기재내용이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서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송장에 있어서 품목표시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오기 또는 오타에 의한 것임이 다른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다른 기재사항에 비추어 문면상 분명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불일치가 오기 또는 오타로 인한 것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일 때에는 상업 송장상의 품목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86. 12. 15. 선고 88나 1264호). 반면에 상업송장 이외의 선적서류에 있어서 품목표시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될 필요는 없고 모순이 되지 아니하는 한 (not be inconsistent with) 일반적인 용어 (General Terms)로 표시될 수 있다고 신용장 통일규칙 (제 4차 개정 제 41조 제 C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106,190메트릭톤으로 신용장의 조건인 100메트릭톤과 편차가 나는 경우에 대하여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의 표시는 신용장 조건의 표시와 일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차이는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문면상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의 품목표시가 신용장 조건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치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다 30026호 판결)

나. 중국 B은행 주장의 구체적 검토

(i) 환어음상의 지급인의 주소 및 환어음 번호누락

이건 신용장은 「this credit is available by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marked as drawn under this credit」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일람출금식 환어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산용장 통일규칙에는 Draft (bill of exchange)에 관하여 신용장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어음번호와 지급인의 주소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어음법 제 1조). 따라서 중국의 B은행의 지급인의 주소 및 번호 누락 주장은 정당한 선적서류 하자 사유로 될 수 없다.

(ii) 상업송장상에 화물적재상태(Packing Conditions) 미기재

중국의 B은행은, 상업송장상에 Packing in Container, 또는 Packing : Standard export packing 등의 화물적재상태 (Packing Conditions)를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적재상태를 표시하여야 하는 여부는 신용장 통일 규칙상 명시되어 있는바는 아니고 이를 요구하기 위하여는 신용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신용장상 상업송장에 관하여,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5 Copies indicating L/C No.」라고만 되어 있어 특별 요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iii) 포장 및 중량명세서상에 "CORE"를 "COR"로 오타

비록 포장 및 중량명세서상에 "CORE"로 타자하여야 할 것을 "COR"로 잘못 타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상에는 "CORE"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오타임에 문면상 분명하며 "CORE"는 "Width", "Length" 와 함께 규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지 않는다.

(iv) 포장 및 중량명세서상의 계약번호 수정

중국 B은행은 포장 및 중량명세서상에 "Contract No"를 타자함에 있어서 "Contracts No."로 타자되어 No 앞에 오타된 글자 "s"를 화이트로 수정한데 대하여

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의자의 확인서 등 여타선적 서류상의 "Contract No"란을 종합하면 신용장상 요구되는 계약의 숫자는 복수가 아닌 단수임이 명백하고 위와같은 수정은 계약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에 불과하고 이 수정부분이 신용장과 포장명세서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다.

(v) 품질 및 수량명세서상에 "ORIGINAL" 문구 누락

중국 B은행은 품질 및 수량명세서 (Quality and Quantity Certificate)가 수입자에 의하여 발행되어 매입시 제시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A은행은 위 품질 및 수량명세서에 "ORIGINAL" 문구가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였고 또한 이것이 1993. 12. 22.자로 발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1993. 12. 23. 매입요청을 받을때에 중국과 한국간의 거리여건상 위조된 것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파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품질 및 수량명세서에 "ORIGINAL" 표시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장 통일 규칙 제2조 제3항 단서는 오직 복사장치 등에 의한 사본인 경우에만 "ORIGINAL" 표시에 의하여 원본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본이 제시된 이전에 있어서는 "ORIGINAL" 표시유무가 쟁점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품질 및 수량명세서가 수입자에 의하여 중국에서 1993. 12. 22. 발행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 다음날인 1993. 12. 23. 바로 한국에서 매입 제시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는, 이는 개개인의 생각(Imagination)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 항공우편으로 우송 받았다면 최소한 2일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입자로부터 발급 받아 당일 직접 한국으로 가져왔다면 1일이면 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간의 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비행기로 수시간내에 도착 할 수 있는 곳이며 우송기간이 다양한 항공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인도 받았을 가능성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B은행의 위조 지득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은행이 서류의 허위 작성여부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적이 여러번 있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 다 956 판결, 1980. 1. 15. 선고 78 다 1015 판결).

(vi) 보험증권상 하인(Shipping Mark)의 누락

중국의 B은행은 보험증권상에 하인란이 누락되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장 조건에는 어디에도 하인(Shipping Mark)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인(Shipping Mark)란은 송하물을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송화물의 의장으로 쓰이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용장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하인(Shipping Mark) 유무는 신용장 불일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vii) 선하증권상의 오타

중국의 B은행은, 선하증권상의 하인(Shipping Mark)상에 표시된 수출자의 회사명중 한글자인 “SUN”이 “SUL”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Notify Party)란에 있어서 통지처인 수입자의 회사명에 있어서 신용장상 개설의뢰인이 “～～Co.”로 되어 있음에도 “～～Co. Ltd.”로 표시하여 통지처의 표시 중 “Ltd.”를 첨가하였으므로 선적서류 불일치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하증권상 하인란에 수출자의 회사 고유명중 한 글자가 영문으로 “SUN”으로 타자되어야 할 것이 “SUL”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상의 하인란, 포장 및 중량명세서상의 하인란과 비교하면 선하증권상의 하인란이 오타된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의 통지처(Notify Party)란의 통지처(수입자) 회사표시에 있어서 첨가된 “Ltd.”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에 불과하고 또한 상업송장상의 수하인, 포장 및 중량 명세서상의 수하인, 환어음상의 지급인 표시와 종합하면 선하증권상의 통지처 표시는 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과 동일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중국측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viii) 선하증권상 선적에 관한 서명과 운송인의 대리인 서명 상이

중국의 B은행은 선하증권상 좌편 아래의 선적에 관한 서명 (On Board Signature)과 우편 아래의 운송인의 대리인 서명이 상이하여 선하증권이 하자있고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편아래의 운송인의 대리인 서명은 선하증권의 유·무효를 가름하는 서명이 아니라 선적일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약식에 의한 서명에 불과한 것이고 신용장상 위 양자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ix) 수의자의 Fax/Telex의 증명사본의 불제시

중국의 B은행은 수의자(수출자)가 선적후 24시간 이내에 선적일자, 선박명칭 등을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알리는 Fax/Telex의 증명사본 (Certified Copy) 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장에 따르면 수의자(수출자)는 "Beneficiary's Certified Copy of Fax/Telex Dispatched to the Accountees within 24 Hours After Shipment Advising Name of Vessel, Date, Quantity, Weight and Value of Shipment"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A은행은 수의자로 부터 "Certified" Copy of Fax/Telex를 수의자로부터 제시받은 것이 아니라 "Certificate"을 수령하였던 것이다. 이 "Certificate"의 내용에는 신용장 요구대로 선박명, 선적일자, 수량, 무게, 가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과연 "Certified Copy" 와 "Certificate"이 성질상 동일한 여부가 주목된다. 위 "Certified Copy" 와 "Certificate"의 제목이 다르므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하느냐는 결국 Fax/Telex 의 Certified "Copy"를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보통 서류의 "Copy" 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제 3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이 서류를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복사기로써 서류를 "Copy"하여 넘겨달라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전 "Certified Copy"의 원본인 Fax/Telex는 수의자(수출자) 자신이 스스로의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자신명의의 Fax/Telex이다. 따라서 이것의 "Copy"를 요구하는 취지는 보통 거래상의 "Copy" (복사기에 의한) 요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대방 자신이 발행한 서류의 "Copy"를 요구하는 것은 변조 가능성의 배제라는 취지보다는 단순히 보관 목적 정도의 의미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Certified Copy"라고 하여야 할 것을 "Certificate"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차이는 신용장 조건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다.

(x) DHL 수취증상의 개설의뢰인 회사 명칭의 오태

중국의 B은행은 한국의 A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 받을때에 사용된

DHL 우편의 수취증(영수증) 기재란에 개설의뢰인의 회사명칭이 “ ~ ~ Imp. ~ ~ ” (Import의 의미) 임에도 불구하고 “ ~ ~ Mp. ~ ~ ”로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하나 선적서류 송부수단에 관하여 신용장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DHL로 송부하든 일반 정규우편 수단에 의하든 이는 신용장 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설사 신용장에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편수취증(영수증)상의 개설의뢰인 오타가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 및 중량명세서와 비교하면 곧 밝혀질 수 있는 이전에 있어서는 신용장 불일치에 이를다고 할 수 없다.

5. 개설은행의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지 시한

가. 내용

이전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중국 B은행은 제 1차 신용장의 경우 1993.12.28.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10일이 지난 1994. 1. 8. 서류 수리 거절 통지를 하였으며, 제 2차 신용장의 경우에도 1993. 12. 31. 접수하여 9일이 지난 1994. 1. 10.에 이의 수리 거절 통지를 하였다.

나. "Reasonable time" 의 해석

신용장 통일규칙(제 4차 개정) 제 16조 (c)항은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가질수 있다.」 (d)항 「만일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다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송부하여온 은행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항 「만일 개설은행이 (c), (d)항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클레임 제기의 권리로 부터 배제된다」고 규정하여 개설은행은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내에 선적서류 수리 거절 통지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그러나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란 용어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통일상법전의 신용장부분 5-112에서는 "개설은행은 서류를 접수한후 3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 5차 신용장 통일규칙 제 14조 (d)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서류의 수령익일부터 제 7은행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경우 "상당한 기간"은 7일

이내로 해석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몇일로 말할수는 없으며 일반어음과는 달리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은 부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의 판단은 서류하자의 중대성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을 다루는 각 은행에는 신용장 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국내 각 은행의 경우 지점은 신용장 불일치 여부를 즉시 본점에 통보하여야 하고 본지점 합하여 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중국의 B은행도 유사한 내부지침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중국 B은행에 대하여 내부지침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완강히 거절 당하였다.

III. 분쟁사례 2

1. 분쟁경위

가. 한국의 I무역회사는 1993. 1993. 8. 중국의 A사와의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중국의 D은행 d지점은 수입자인 A회사로부터 한국의 I무역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개설의뢰를 받고 1993. 8. 19. 미화 939,313.00달러 액면의 액면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한국의 C은행에 통지하였다. 단 지급조건은 미화 321,040달러는 선적서류제시후 30일 이후 지급이고, 나머지는 선적후 2년이 지난후 지급조건이며, 신용장 유효기간은 1994. 1. 15.이다.

다. 한국의 C은행 c지점은 1993. 12. 30. 수출자 I무역회사로부터 위 신용장에 기하여 작성된 수출환어음 및 관련 선적서류 제시와 매입요청을 받고 검토결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수출자 I무역회사에게 신용장 액면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중국의 D은행 d지점은 위 선적서류를 우송받자 신용장 유효기간내에 1994. 1. 11.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하자통지를 하였다.

마. 수출자 I무역회사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다.

2. 중국 D은행에 의한 선적서류 하자 통지의 내용

중국 D은행이 선적서류 수리 거절 통지한 이유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의 상품명세가 서로 상이하다는 데 있다. 즉 중국 D은행의 주장은 수출상 I무역회사가 작성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는 "Excavator Solar 220 LCI 11"이나, 신용장상의 상품명세는 "Excavator Solar 220 LC 1991"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3. 중국 D은행의 하자 통지내용에 대한 검토

이건 신용장도 앞서 예시한 사례와 마찬가지 신용장 통일규칙 제4차 개정판에 의해 규율된다. 위 규칙 제 41조 (c)은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조 동항의 후단이 기타서류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고 대비적으로 규정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이건 중국 D은행의 서류 수리 거절 통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건 신용장과 관련하여 중국 B은행은 10차례 신용장 수정/변경 통지를 하여 왔는데 한국 C은행에 내도한 최초 신용장에는 "Excavator Solar 220 LC 1991"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 수정을 위한 신용장 통지서상에는 "Excavator Solar 220 LCI 11"로 표기된채 Telex 되어 온 것이다.

최종 수정 신용장 통지서는 상품명세의 수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타 전의 수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상품명세가 애초의 "Excavator Solar 220 LC 1991"로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하고 "Excavator Solar 220 LCI 11"로 기재되었

던 것이다. 즉 중국 D은행은 정확히 타자하여 Telex하였으나 한국 C은행 Telex 전송문에는 상이하게 찍혀 나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장 통일 규칙 제 18조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통보 또는 서류의 송달중의 지연 및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나 또는 전기통신 수단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 훼손 또는 기타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건 서류 하자에 대해 개설은행은 전송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은행의 중과실, 고의로 인한 전송 등의 오류의 경우 면책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며, 은행에 과실(경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개설)은행의 내부적인 전송상의 오류는 당해 (개설)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다는 것이다.

4. 기타 문제점

이건 분쟁이 발생한 신용장에 또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바, 그것은 신용장 금액중 미화 618,273달러의 지급은 선적후 2년이 지난후 하게 되어있는바, 이의 지급조건은 수의자와 개설의뢰인 양자가 함께 발행한 작동증명서(Certificate of Operation)의 제출이다. 그러나 서류 하자의 경우 개설은행은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인수여부를 태진하고 개설의뢰인이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 서류송부은행에 거절 통지를 하는바, 이 특약조항은 수출상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아닐수 없다. 잔액의 지급여부가 순전히 수입자의 자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입은행이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액 매입을 한다는 것은 수출상에 대한 과도한 신용제공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결어

최근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무역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양국간 무역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행은 신용장 관련 서류 처리에 있어 일반적인 은행관행을 무시하고 자국회사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자국회사에 유리한 특수조건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이 신용장 관련 업무를 취급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준거가 되는 신용장 통일 규칙을 문면 그대로 엄격히 적용하여 규칙 이면에 있는 일반상관행이라든가, 은행간의 상호 신뢰 등은 생각치 않고 자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상당한 기한”의 적용에서 볼수 있듯이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에서 중국관련 신용장의 매입 등에서 신용장의 조건이나 서류간의 일치여부를 검토할 경우는 철저하고 치밀하게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할 필요가 있으며, 약간의 의문점이 생길 경우에는 항상 상대은행측에 통지하여 확인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위의 분쟁사례 2를 자세히 검토해 볼때 문제가 된 신용장은 개설되어 무려 10차례에 걸친 신용장의 수정통지가 있었으며, 만일 은행 관계자가 좀더 면밀히 원 신용장 및 수정통지를 검토하였다면 상품명세가 각 통보사이에 상이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은행관계자로서는 최종 수정통지만 확인하여 서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이와같은 유사한 분쟁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여 수출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과의 계약체결시에 우리나라측에 너무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분쟁사례 2에서의 잔액 지급조건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치도 못했던 사정들이 계약이행과정이나 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업계는 중국 회사와의 계약시 독소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평등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하여야 하며, 은행관계자들도 신용장 서류 처리시에 좀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세밀히 검토하여 예견되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고 업계에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